



정부,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

- 2월 21일(수),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
-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,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
-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제공

□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대검찰청, 경찰청은 2.21.(수)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였다.

* (참석) 법무부 장관, 행정안전부 장관, 경찰청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

□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,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.

□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,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,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.

○ 이에,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,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.

○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,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첫째,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,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.

-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.
- 둘째,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.
 -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.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.
 -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.
 -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,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.
- 마지막으로,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·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.
 - 대한법률구조공단, 법률홈닥터,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,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- 한편,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	책임자	과 장	한치흠 (02-2100-4310)
		담당자	경 정	한대원 (02-2100-4312)
		담당자	경 감	정만식 (02-2100-4315)
담당 부서	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	책임자	과 장	조민우 (02-2110-3280)
		담당자	검 사	조혜민 (02-2110-3280)
담당 부서	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병주 (02-3480-2340)
		담당자	검 사	김은혜 (02-3480-2340)
담당 부서	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송원영 (02-3150-2068)
		담당자	경 정	이영태 (02-3150-1144)